

000원이 되겠으나 현재 징수하고 있는 전기사용료 1,127萬7,000원보다 1,403萬7,000원이 더 많은 稅收增大 효과를 보게 되며 月平均 個人別 簡易上水道料金은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業所는 현재 전기료 6萬5,513원보다 24萬4,587원이 많은 310萬100원을 부담하게 되나 上水道 基準 41萬2,350원보다 10萬2,250원이 적으며, 물을 제일 적게 사용하는 業所는 현재 전기요금 1,240원보다 3,885원이 더 많은 5,125원을 부담하게 되며 上水道基準料金 보다는 685원이 적은 설정입니다. 급수장치중 옥외매설된 모든 施設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市 所有로 하되 耐久年限이 경과한 計量器, 給水裝置의 修繕, 撤去, 老朽管 改替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하여 市에서 施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條例案은 簡易上水道施設의 적정 관리와 원활한 물공급을 위해서는 料金徵收가 불가피하여 이의 根據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오니 原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張魯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翼武 專門委員입니다.

大邱直轄市八公山自然公園集團施設地簡易上水道給水條例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報告)

1. 提出過程

- 提出日字 : '93年 10月 16日
- 提出者 : 大邱直轄市長
(環境綠地局長)
- 檢討期間 : '93年 10月 16日 ~
10月 20日(4日間)

2. 主要骨子

- 八公山自然公園 集團施設地의 簡易上水道 料金徵收 根據마련
 - 給水區域은, 集團施設地와 市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地域으로 하고,
 - 給水工事を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의 承認을 얻어, 給水工事 代行業者로 登錄된 者가 하도록 하며,
 - 工事費는 申請人の 負擔으로 하되, 耐久年限이 經過한 裝置의 改替나 修繕 및 給水管老朽로 因한 改造工事費는 市에서 負擔
 - 給水裝置中 屋外埋設된 모든 施設物은 申請人の 寄附에 의해 市 所有로 하고,
 - 料金의 徵收는 使用 水量의

요율표에 의하여 算定된 料金과 給水裝置 損料를 同時 徵收하며,

- 條例에 規定에 의한 市長의 權限은 八公山 自然公園 管理所長에게 委任

3. 根據法令

- 水道法 第32條, 第51條, 施行令 第3條, 第21條

4. 檢討意見

- 本 條例(案)은, 八公山自然公園 集團施設地區內에 供給되고 있는 簡易上水道 料金을 徵收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 條例(案)의 内容은 “수도법”을 根據로 制定되어 現在 施行되고 있는 “대구직할시수도급수 조례”의 規程中에서,
- 簡易上水道 給水에 必要한 内容을 発췌, 本 條例(案)이 作成

되었기 때문에 條例(案)의 内容은 向後 施行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判斷되어 異見이 없으나,

- “별표2”의 業種 區分表 分類에는 集團施設地區內 入住可能性이 없는 業種까지 包含되어 있으므로,
- 一部 業種의 區分事項은 削除하여도 條例 施行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料金을
- 其他 料金水準등을 檢討한 結果, 提案說明과 같이 現在의 上水道給水料 보다는 낮은 水準으로 規定되어 있음.

5. 參考資料

- 八公山自然公園集團施設地 現況 : 別添#1
- 大邱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와 料金 比較表 : 別添#2

6. 條例(案)全文 : 別添#3

별첨 #1

八公山自然公園 集團施設地 現況

○ 부지면적

계	동화지구	파계지구	갓바위지구
752,000m ² (227,481평)	423,000m ² (127,958평)	157,000m ² (47,393평)	172,000m ² (52,030평)

○ 집단시설 분양

구 분	계	동 화 지 구	파 계 지 구	갓바위 지 구	비 고
계	204	122	47	35	○ 분양년도
식 당	118	80	16	22	• 동화지구 :
휴게소	14	3	8	3	'83. 12. 20
매점	14	5	7	2	• 파계지구 :
토산품	13	6	3	4	'84. 12. 28
생활 품	10	8	2	—	• 갓바위지구 :
유통업소	2	1	1	—	'87. 11. 25
일반유통	1	1	—	—	
레스토랑	2	1	1	—	
방 가로	2	1	1	—	
호텔	4	3	—	1	
여관	21	10	8	3	
실내오락실	1	1	—	—	
주차장	1	1	—	—	
유화시설	1	1	—	—	

별첨 #2

料 金 比 較 表

單位 : 톤, 원

區 分			大邱直轄市	八公山簡易 上水道條例
業種別	基本水量	超過水量	水道給水條例	
가정용	0 ~ 10		1,450	단일요금
	11 ~ 30		190	톤당 225
	31 ~ 50		240	
	51 이상		300	

區 分		大邱直轄市 水道給水條例	八公山簡易 上水道條例
業種別	基本水量	超過水量	
영업용	10 ~ 20		5,000 4,450
		21 ~ 50	270 225
		51 ~ 100	3300
		51 ~ 200	240
		101 ~ 300	300
		201 ~ 300	250
공공용	300이상	350	260
	0 ~ 50	9,000	9,000
	51 이상	310	240

※ 초과수량의 금액은, 매 초과 톤당 요액임.

별첨 #3

條例(案) 全文

대구직할시 팔공산자연공원집단 시설지간이상수도급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및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이하 “시”라 한다)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간이상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

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연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동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대구직

할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단시설지와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급수공사를 하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부담금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등록된 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 공사비용(옥내 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6년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의 공사중 도로복구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③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로부터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 소유로 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를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공사비의 정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13조(수도의 사용) 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신고) 간이상수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1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

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도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간이상 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제18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간이상수도 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19조(요금) 요금은 별표1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하되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업종의 구분)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21조(요금의 산정)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제22조(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제23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실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6/10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가 이미 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단, 13㎾ 수도미터 오차는 한국공업규칙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량기의 이상이 있어 교체할 경우에는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제24조(납기와 징수방법)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20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징수할 수 있다.**제25조(급수장치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3에 의거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26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5/100$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제2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별지 제1호서식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②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월분과 당월분과 구분되게 부과하여야 한다.**제28조(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급수를 도용한 자
4.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5.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

전한 자

7.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29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30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31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 자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대구직할시 팔공산 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94. 1.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 종 별 요 율 표

(수량:톤, 금액:원)

업 종 별	월 가 본 요 금		초 과 요 금		비 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영 업 용	0 ~ 20	4,450	21 ~ 50	225	초과요금란의
			51 ~ 200	240	금액은 매초과
			201 ~ 300	250	톤당 요액임
			301 이상	260	
공 공 용	0 ~ 50	9,000	51 이상	240	
가 정 용	단일요금으로 함(톤당)			225	

(별표 2)

업 종 구 분 표

 영업용

- 식품점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청량음료제조업, 제빙, 냉동, 냉장업, 도축장
- 공연장, 예식장, 백화점
- 숙박업
- 유기장, 노래방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 사설학원, 독서실
- 사진현상소,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 금융기관(보험회사, 사설금융기관, 증권업 포함)
-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제외)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 운반급수 및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단, 입주전까지에 한하여 운반급수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 목욕장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제조,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종

 공공용

- 관공서, 병영

○ 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원로단체, 사회단체(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
-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사무소

 가정용

- 전용 또는 공동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10m² 미만의 담배업소, 연탄, 양곡소매업,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 노인정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표 3>

금 수 장 치 손 료

구 경	금 액	비 고
13%	730원	
20%	1,030원	
25%	1,170원	
40%	2,180원	
50%	7,390원	
75%	9,520원	
100%	12,880원	
150%	21,560원	
200%	39,760원	
250%	70,420원	
300%	113,680원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제1호 서식)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간이상수도요금

납입고지서

제호	년도	회계
(관)	(항)	
(목)		

일금

당월분 : 원

전월분 : 원

급수장치손료 : 원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정수관

성명 ①

(납부자)

귀하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간이상수도요금

영수필통지서

제호	년도	회계
(관)	(항)	
(목)		

일금

당월분 : 원

전월분 : 원

급수장치손료 : 원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금고 ①

년 월 일

정수관 귀하

납부자			
정수관	①	취급자	①
수입금	①	기장	①
출납원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간이상수도요금

영수증

제호	년도	회계
(관)	(항)	
(목)		

일금

당월분 : 원

전월분 : 원

급수장치손료 : 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①

년 월 일

(납부자) 귀하

〈별지 제2호〉

급 수 공 사 신 청 서

1. 아래와 같이 대구직할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간이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대구직할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간이상수도급수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한 모든 시설물은 귀 시에 기부채납함.
 3. 신청내역

수전위치	대구직할시	구동가	번지의
급수종별	공사구분	신규, 개조, 구경확대, 위치변경	
월소요량	구경	%	수도번호
건물준공 유무	준공 번호	준공 년월일	건축주
용도	구조 건축면적	대지 면적	

199

신청자 주소 : 대구직할시 구 동 가 번지의

성명 :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

대구직할시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착 공 계

1. 공사명 : (급수전)
2. 도급액 : 원정
3. 공사기간 : 199 . . . ~ 199 . . .
4. 착공일자 : 199 . . .

위와 같이 착공합니다.

199 년 월 일

도급자 주소 :

상호 및 성명 : ①

(별지 제4호)

준 공 검 사 조 서

공사명 :

199 년 월 일 준공

199 년 월 일 과 계약분

도급액 :

위 공사 준공검사원 명을 받아 199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공
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

199 년 월 일

준공검사관 :

①

입회원 :

①

귀하